

## 【 4 】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2005. 9. 20

제 출 자 양 주 시 장

### □ 개정이유

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,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#### 가.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(안 제13조)

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, 시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#### 나.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(안 제15조)

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
#### 다.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(안 제16조)

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#### 라. 특별휴가의 조정(안 제25조)

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, 포상휴가·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,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, 배우자의 출산, 배우자의 사망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·외조부모·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, 휴가일수를 축소함.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·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중 “공휴일근무”를 “공휴일 등 근무”로 하고, 같은조제1항중 “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는”을 “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”로, “공휴일”을 “토요일 또는 공휴일”로 하며, 같은조제2항중 “공휴일”을 “토요일 또는 공휴일”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6조(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)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2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중 “공휴일”을 “토요일 또는 공휴일”로 하고, 같은조 중 “공휴일”을 “토요일 또는 공휴일”로 한다.

제28조중 “공무”를 공무외“로 한다.

(별표 3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제7항, 제25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[별표 3]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
[별표 3]

##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5조제1항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7
출 산	배우자	3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

비고 :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</p> <p>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</p>	<p>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·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
<p>제15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)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-----공휴일 등 근무) ①-----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----- -----토요일 또는 공휴일----- -- ②-----토요일 또는 공휴일----- -----토요일 또는 공휴일----- -----</p>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)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)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<p>제17조(토요일휴무제)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~⑥ (생략) &lt;신 설&gt;</p>	<p>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제25조(특별휴가) ①~② (생략)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제25조(특별휴가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</p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④~⑤ (생략)</p> <p>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상훈법」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</p> <p>2. 「정부표창규정」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</p> <p>3. 청백리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</p> <p>4. 「모범공무원규정」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</p> <p>5.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</p>	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⑦시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, 장기 근속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내의 승선후가를 얻을 수 있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</p>	<p>&lt;삭제&gt;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u>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</p> <p>⑩ (생략)</p> <p>제26조(휴가기간 중의 <u>공휴일</u>) 휴가기간 중의 <u>공휴일</u>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28조(공무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<u>공무</u>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</p>	<p>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휴가기간중의 <u>토요일 또는 공휴일</u>) -----<u>토요일 또는 공휴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8조(공무외의 국외여행) ----- -----<u>공무외</u>----- -----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 3) 경조사별 휴가일수표</p>	<p>(별표 3) 경조사별 휴가일수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 상</th> <th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결혼</td> <td>○ 본인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○ 자녀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회갑</td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산</td> <td>○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사망</td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·중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탈상</td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·중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일수	결혼	○ 본인	7	○ 자녀	1	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	회갑	○ 본인 및 배우자	5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	출산	○ 배우자	3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7	사망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·중조부모·외조부모	5	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	○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2	탈상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·중부모·외조부모	1	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 상</th> <th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결혼</td> <td>○ 본인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○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출산</td> <td>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○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일수	결혼	○ 본인	7	○ 배우자	3	출산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	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
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○ 본인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자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갑	○ 본인 및 배우자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○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·중조부모·외조부모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탈상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·중부모·외조부모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○ 본인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